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등록 외

Q 컴퓨터프로그램도 특허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A 컴퓨터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적인 성격이 강하여 특허법 보다는 별도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등록에 관하여 등록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www.socop.or.kr)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대상임).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부터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청구한 경우에 컴퓨터프로그램의 기능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매체와 컴퓨터프로그램간의 구조적, 기능적 상호관계를 정의하고 있으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컴퓨터관련발명심사기준은『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 즉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수준에서 당해발명의 기술적 사항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하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그 수단 또는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플로우차트 등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특허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 등이 특허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

• 물건의 발명

특허청구범위가 하드웨어 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형태로 기계 또는 제조물의 물리적 구조를 특정하여 유용한 기계 또는 제조물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된다. 또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또는 데이터구조를 기록한 기록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으며 그 기록매체를 기능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된다.

• 방법의 발명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기술적 사상은 그 프로그램의 수순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문제해결을 위해 이용하는 수순의 법칙성이 자연법칙인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방법의 발명으로 특허될 수 있다. 이때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컴퓨터 관련발명의 구성요소의 결합전체를 판단대상으로 해야 한다. 특허청구범위에는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실행되는 수순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행되는 수순과 컴퓨터와 응용기기를 구성하는 것에 의해 실행되는 수순을 시계열적(時計列的)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과정을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장치발명

컴퓨터가 어떤 장치나 시스템에서 특정의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실현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이러한 기능실현수단에 의해 구성되는 발명은 장치발명으로서 특허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발명의 성립성 여부 및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구성요소 전체의 결합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에 필요한 소정의 다수 기능실현수단과 그 외의 컴퓨터 응용기기를 구성하는 것과의 결합관계를 명백하게 기재해야하며, 기능실현수단 대신 컴퓨터의 동작 또는 프로그램의 실질적 내용에 상당하는 수순을 기재해서는 안된다.

Q 공지된 기술을 전용하는 형태로 발명을 한 경우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특허출원이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06.10.1 출원분부터는 국내외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특허법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참고하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공지발명에 비하여 그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가 특이한지 여부 등에 따라 진보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적으로 그 발명의 실시여부, 상업적 성공, 발명의 유형 등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지기술의 조합에 상당하는 발명, 공지기술을 치환한 발명, 공지기술을 단순히 전용한 발명, 공지기술의 단순한 용도변경에 상당하는 발명, 공지기술의 배열 · 상태변경에 불과한 발명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본원발명과 선행기술의 진보성 판단시 그 비교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 진보성이 인정됩니까?

A 특허요건 중 진보성 판단은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기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대상으로 대비 판단합니다. 양자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술수단이 상이하므로, 그로 인하여 선행기술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본원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석현 변리사

현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한 바 있고, 이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대표 변리사를 지냈으며 법무법인 충정에서 특허부를 총괄했다. 현재 청우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로 있다.
문의 : (02)521-7671
e-mail : kimsh@chwpat.com